

취업진로지원위원회 규정

제정 1990. 09. 01.
제8차 개정 2019. 06. 25.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“상지대학교 취업진로지원위원회”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(개정 2006.05.22., 2016.06.21., 2019.06.25)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을 성과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기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효율적인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6.06.21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10인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**인재개발원장,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**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(개정 2003.03.01, 2006.05.22, 2009.02.19., 2017.06.27., 2019.06.25)

②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단과대학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06.05.22, 2009.02.19, 2017.06.27)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 직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. (조 개정 2001.6.21)

제4조(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상의 제반실무를 담당한다. (조 개정 2001.06.21)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사항은 심의 한다. (개정 2016.06.21)

1. **취업**, 진로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개정 2016.06.21., 2019.06.25)

2. 취업률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(개정 2016.06.21)

3. 삭제 (2017.06.27)

4. 삭제 (2017.06.27)

5. **취업**, 진로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,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(신설 2016.06.21.) (개정 2019.06.25)

6. 그 밖에 **취업**,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(항 변경 및 개정 2016.06.21.) (개정 2019.06.25)

제6조(회의 및 소집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삭제 (2001.06.21)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(조 개정 2001.06.21)

제7조(평가주기/활용) ① **취업**, 진로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,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. (개정 2019.06.25)

②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에 반영한다.

(조 신설 2016.06.21)

제8조(재정) 위원회의 운영상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의 지원을 받는다.(조 변경 2016.06.21)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)

부칙

이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502, 2006.5.22)

이 규정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72, 2009.2.18)

이 규정은 2009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 498, 2016.06.21)

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 284, 2017.06.29)

이 규정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